

<보도일시>: 2023. 3. 8.(수) 08:00 이후

「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」 추진계획

2023. 3. 8.

고 용 노 동 부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기본방향	2
III. 세부 지원사업	4
1. 임금 : 원·하청의 임금격차 완화	4
2. 복지 : 원·하청의 복지격차 완화	5
3. 훈련 : 숙련인력 양성 지원	7
4. 안전 : 안전한 작업장 구축 지원	8
5. 고용지원 :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	9
IV. 제도적 지원방안	11
V. 기대효과	13
VI. 추진일정	14

I. 추진배경

□ 친환경 선박 중심의 수주 지속 증가, 그러나 현장은 구인난 심화

- '21년부터 호황 수준의 수주 지속*, 특히 우수한 기술력으로 고부가·친환경 선박 수주증가 → 향후 5년 이상 추세 계속 전망

* 국내 수주량(만CGT): ('19) 1,007 → ('20) 827 → ('21) 1,764 → ('22) 1,559

- 그러나, 선박 건조 현장에서는 저임금·고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의 **신규인력 유입 매우 저조***, 기존 숙련인력의 **이·전직****도 심각

→ 조선업은 고속련 노동투입이 여전히 중요한 산업으로,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

* '22.下 미충원율(%): (조선) 34.0 > (제조) 28.7 > (전산업) 15.4

** '22년 주요 제조업 이직률(%): (조선) 3.4 > (뿌리) 3.0 > (자동차) 2.3

□ 이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원하청 격차 심화에 기인,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원하청 스스로 「상생협약*」 체결(2.27일)

- 특히, 원청의 **기성금 인상**을 통한 임금·복지 격차 완화가 핵심

* 「상생협약」 주요내용: 적정 기성금 지급, 숙련 중심 임금체계 개편, 에스프로 결제 제도 활용, 재하도급(물량팀) 사용 최소화, 체납보험료 납부 지원 등

- 그러나, 조선업계의 **Heavy Tail*** 특성 등으로 원청은 **향후 2~3년간 경영난 여전**, 큰 폭의 기성금 인상은 어려운 상황

* 수주한 선박을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 대금의 대부분을 받는 계약방식

↳ ('21) 선박수주 → ('22) 설계 → ('23~'24) 건조<인력수요 ↑> → ('25) 인도<대금수령>

→ 단기적으로 원하청의 임금·복지 등의 격차 계속 불가피

▶ 이에, 향후 2~3년간의 과도기 상황에서 조선업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고,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원하청 격차 완화를 지원

- 아울러,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숙련인력 양성, 안전한 작업장 구축 등을 지원하고, 협력업체 고용지원 등을 **패키지**로 구성·지원

II. 기본방향

- ① 「**상생협약**」 과제에 대한 원하청의 **성실 이행**을 **전제**로 지원
 - 원청의 기성금 인상 및 하청의 임금인상 등 **이행상황**에 따라 지원규모 **조정** 또는 계속 **지원여부** 등 결정
 - 「**조선업 상생협의체***」를 통해 이행상황을 **지속 모니터링·점검**
 - * 조선 5사 원·하청사, 민간전문가, 고용부·산자부·공정위, 자치단체 등 참여
- ② 조선업계로의 **인력유입 - 유지 - 양성**을 체계적·종합적 지원하기 위해 「**임금 - 복지 - 훈련 - 안전 - 고용지원**」 쏠영역을 패키지로 구성·지원
 - 예산사업의 경우, 정부지원과 함께 **자치단체**와 **원청도 분담**하고, 추후 필요시 「상생협의체」 등을 통해 지원사업 추가 발굴
 - 한편, 패키지 지원사업과 함께, **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 및 인력 운용 지원** 등을 위한 '**제도적 지원방안**'도 마련
- ③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**주로 하청기업·근로자**로, 원활한 인력수급과 동시에, '**물량팀**'(재하도급)의 **자발적 전환*** 유도·촉진
 - * '물량팀' → '사내협력사'로 전환 / 물량팀 소속 '종사자' → 사내협력사 '근로자' 등
 - ※ (참고) 업황변동, 야외작업 돌발변수 등 업계 특성상 일부 **유연작업팀 불가피**, 그러나 **최근 사내협력사 구인난 심화** 등으로 **물량팀 급증**(1만명 내외 추정)



협력업체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**제도적 지원**

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

	세부 지원사업	지원대상
임금	· 조선업 희망공제 확대 (신규입직자 + 재직자)	협력업체 근로자
	·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(컨설팅 + 인센티브)	원청·협력업체 노사
복지	·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	협력업체 근로자(7개 기금)
	· 하청근로자 생활환경·근로환경 개선 지원	협력업체 근로자
훈련	·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	원청·협력업체 근로자
	· 채용예정자훈련 확대·우대 (훈련수당 20 → 100만원)	협력업체 채용예정자
	· 장기유급휴가훈련 우대 지원 (훈련비 50% 추가지원)	협력업체 근로자
	· 폴리텍 교육훈련과정 확대	조선업 훈련생
안전	· 스마트안전장비 및 산재예방 시설개선 특별 지원	협력업체
	· 안전보건패키지 시범도입 (진단 → 컨설팅 → 재정지원)	협력업체
	·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대 지원	원청·협력업체
	·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 우대 지원	원청
고용지원	·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(월 100만원·최대 12개월)	협력업체
	·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신설 (월 50만원·최대 6개월)	협력업체·근로자
	· 조선업 일자리매칭 지원 강화 (오프라인·온라인)	구인기업·구직자

Ⅲ. 세부 지원사업

1 임금 Part: 원·하청의 임금격차 완화

1 「조선업 희망공제」 확대

- ① '22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을 위해 시범실시한 **신규입직자** 대상의 1년 만기 총 600만원* 자산형성 공제사업의 **지원대상을 대폭 확대**

* 근로자 150 + 자치단체 150 + 정부 300 → **신규입직자 소득 상승효과(+ 年 450만원)**

- 기존 연령제한(45세) 폐지 통한 지원요건 완화 및 대상지역 확대*
→ '23년 목표인원: 2천명('22, 1,175명 대비 825명 확대)

* ('22) 울산, 거제, 전남영암·해남 → ('23) **울산, 거제, 전남, 전북군산, 부산 등**

- ②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**재직근로자**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 추진 ('24~'25년 **2년간 한시운영**)

- 정부뿐 아니라, 근로자·기업(원청)*·자치단체가 비용분담 주체로 참여, 「**상생협약**」 체결·이행 초기의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 지원

* 재직자 대상 「조선업 희망공제」 사업은 **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운영 가능**

- 재직자의 **장기근속 유도·지원**을 통해 이·전직 감소 및 구인난 해소 기여 → 근로자 숙련도·생산성 및 산업·기업경쟁력 제고

- **사업종료 이후에는 원청의 기성금 인상으로 임금수준 유지·상향**

사업운영(안)

- (납입주체) 근로자·기업(원청)·자치단체·정부 **4자**
- (납입기간) **2년** 만기(24개월, 가입일 기준)
- (납입액·수령액) 4자 각 2년간 **200만원*** 납입, 만기시 **총 800만원**** 수령
* (월별 납입액, 예시) 8만원 20개월, 10만원 4개월 ** 재직자 소득 상승효과(+ 年 300만원)
- (가입기간) **사업시행후 3개월**(예: '24.1~3월)

②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

- ① 조선업계 스스로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원·하청이 공동 참여하는 **컨소시엄형 컨설팅 대폭 확대***

* 컨소시엄형 컨설팅(임금체계 개편 포함): ('22년) 77건 → ('23년) 260건

- 사업장내 갈등해소 위해 **노사파트너십** 및 **상생교육** 등 연계 지원

- ② 직무중심 임금체제로 개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**정부 지원금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*** 지원

* (예시) 불이익 근로자 임금감소 지원 등

- 지원대상·기준 등 구체적 지원방안은 「상생임금위원회*」('23.2~)에서 별도 마련·발표('23.4월)

* 기재부·산업부·공정위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참여(위원장: 고용부장관·이재열교수)

2 복지 Part: 원·하청의 복지격차 완화

① 「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」 확대

- 하청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원·하청과 자치단체가 출연하고, 정부가 매칭지원하는 「공동근로복지기금*」의 규모 확대 추진

* 조선업계는 주요 5개사 중심의 총 7개 복지기금 운영 중

↳ 복지사업(예시) 학자금, 주택대부금, 종합검진, 경조사, 명절선물 등

- '23~'25년 3년간 원청의 출연금에 대한 정부의 매칭지원 **한도**를 **상향**하고,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매칭지원 **기간**을 **연장**

【 조선업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방안】

구분	현행	확대
원청 출연	매년 최대 10억원 매칭지원	'23~25년간 최대 20억원 매칭지원(이후 최대 10억원)
자치단체 출연	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칭지원(매년 최대 6억원)	설립일 무관, '23~25년간 계속 매칭지원 (매년 최대 6억원)

○ 이를 통해 조선업 기금 규모가 3년간 매년 170억원* 추가 확대 가능

- 기금 규모가 '22년(총 193억원)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, 그만큼 사내협력사 근로자 대상의 복지사업 확대 전망

* 현재 출연 중인 원청(7개사)에서 각 10억원, 자치단체(5개소)에서 각 3억원 추가 출연 가정시, 출연금 85억원(원청+자치단체) + 정부 지원금 85억원(매칭) = 170억원

【 조선업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('22년 기준)】

구분		A사	B사	C사	D사	E사	F사	G사
출연	협력사	10	-	0.2	4.3	9.5	10	-
	원청	10	1.5	3.5	10	10	10	10
	자치단체	0.8	0.1	-	6	6	0.8	-
	소계	20.8	1.6	3.7	20.3	25.5	20.8	10
정부지원		20.8	1.6	3.1	17.2	21.7	17.7	8.5
합계		41.6	3.2	6.8	37.5	47.2	38.5	18.5

② 하청근로자의 생활환경·근로환경 개선 지원

○ 기숙사·개별세대 임차료, 교통비 지원, 공동세탁소 운영 등 생활 환경 개선 및 휴게실·샤워실·화장실 등 **공동이용시설 개선** 지원

○ 「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*」 활용, 정부-자치단체 협업 통해 지원

* 매년 자치단체 대상 사업공모를 통해 적합사업 선정·지원

지원 사례

- (예시 1) 거제시는 지역내 사내·외 협력사를 위해 **샤워장 개보수**, 작업장 내 **간이 화장실** 및 **직원 휴게공간** 조성공사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
- (예시 2) 전남영암군은 원거리 통근 협력업체 직원을 위해 **공용 버스 임차** 지원
- (예시 3) 울산동구는 타지역 거주 근로자 대상 **기숙사** 등의 **임차비용** 지원

3 **훈련** Part: 숙련인력 양성 지원

1 「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」 확충

- 현재 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 등 총 4개소 운영·지원 중
 - 재직자·구직자 대상으로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등에 따른 저탄소·친환경 선박발주 증가 등에 대응한 **맞춤형 직무훈련** 실시제
 - 장비비 등 1년차 15억, 2~5년차 7.5억씩 **5년간 총 45억원** 지원
- 추후 조선업계의 산업전환 특화훈련 수요증가에 맞춰 「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」 추가 선정 추진('23.上)

2 「채용예정자훈련」 확대·우대 지원

- 원청 **기술연수원**을 '공동훈련센터'(총 12개소)로 활용, 협력업체의 채용예정자·취업희망자 대상 조선업 **현장 맞춤형 훈련 확대**
 - 조선업계로의 훈련생 참여촉진 위해 **훈련수당 우대**(20 → 100만원)
→ '23년 목표인원: 1.5천명('22, 1.2천명 대비 300명 확대)

3 「장기유급휴가훈련*」 우대 지원

- 협력업체에는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**훈련비 50% 추가 지원** (특별고용지원업종·고용위기지역 사업장과 동일)
 - *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, 최소 4주 이상 훈련할 경우, 훈련비 (NCS 기준단가 100%) 및 인건비(최저임금 150% 범위) 지원

4 「폴리텍」 교육훈련과정 확대

- 조선소 주변 **폴리텍 캠퍼스**를 활용, 수준별 인력양성 실시 중
 - * 동부산, 창원, 포항, 전남, 남인천, 진주, 강릉 등 7개 캠퍼스(연 350명 내외)
- 기업 수요를 받아서 교육훈련과정('비학위') **추가 확대** 추진
 - *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등 협의 통해 **'23년 하반기 과정**(2~3개월) 개설 추진

4 안전 Part : 안전한 작업장 구축 지원

1 스마트안전장비 및 산재예방 시설개선 특별 지원

-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중기범상 소기업*에 스마트안전장비 구입,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등 재정지원 중
 - * 평균매출액 120억원(제조업 등) ~ 10억원(음식점업 등) 이하 기업, 조선업은 80억원
- 협약체결 기업의 협력사(사내·외)의 경우,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**50인 이상 중소기업**(평균매출액 1천억원 이하)에게도 **재정지원**

구분	지원내용	지원액
스마트안전장비 발굴·보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 지원 	최대 3천만원
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충돌, 추락, 끼임, 화재·폭발, 질식, 직업병 예방 등 재해예방 품목(제조업 등) 시스템비계(임대비용) 및 추락방지망 등 (건설현장 한정) 	최대 3천만원
안전투자혁신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험기계 교체, 위험공정 개선 	최대 7천만원~1억원

2 「안전보건패키지」 시범도입

- 협약체결 기업의 협력사(사내·외)에는 기존 컨설팅사업을 확장, **위험성평가*** 중심의 **진단 → 컨설팅 → 재정지원**으로 패키지 지원
 - * 노사가 함께 산업안전 check list를 참고하여 현장 위험도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시설·장비 확충, 예방교육 등 실시

3 「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」 우대 지원

- 원·하청이 함께 「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」 참여시 **우대 선정**
 - 참여 컨소시엄에는 기술지도 및 상생협력활동 **소요비용*** 등 지원
 - * 위험성평가 기법전수, 안전교육, 캠페인 등 정부·원청이 각 50% 매칭 지원
 -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자발적 산재예방 활동·조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**산업안전감독 대상 미포함*** 등의 **혜택 제공**
 - * 단, 중대재해 발생시 감독 실시(사후감독, 특별감독) 실시

④ 「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」 우대

- 조선사 원청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(사내협력사 포함)을 점검하는 「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*」 도입·운영 중('11~)
- 협약체결 원청에게는 협약 이행과정에서의 부담·양보 등을 감안, 금년도 평가항목*(총 6개) 중 도급 관련 분야(2개) 면제**

*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작성·제출하게 하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, 이후 계획서 이행상태 확인 및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별 차등관리

* ①안전보건관리체제 및 현장작동성, ②유해·위험성평가, ③안전보건교육, ④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, ⑤도급 체계, ⑥안전보건투자 등 6개 항목

** 단,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면제 취소

5 고용지원 Part: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

① 「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」 신설

- 협력업체에서 만 35~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, 임금을 최저임금 120%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,
-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(최대 1,200만원)

☞ 협력업체 채용지원 + 근로자 임금상승 동시 효과

* (참고)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: 6개월 이상 실업 등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, 최저임금 100% 이상, 월 60만원·최대 12개월, 2년 근속시 480만원 추가 지급(최대 1,200만원)

② 「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」 신설

- 선박건조 현장에서의 숙련기술전수 및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지원(협력사간 이동 가능)
- 협력업체에게 채용장려금 및 근로자에게 숙련기술전수수당 지급 (기업·근로자에게 각 월 50만원·6개월, 중복·반복수급 불가)

* (참고)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: 정년이후 당해사업장에서 계속고용시 분기 30만원·최대 2년

③ 조선업 일자리매칭 지원 강화

□ 오프라인

○ 조선업 밀집지역 특화지원

- 울산 등 밀집지역 고용센터(6개소)에 「신속취업지원 TF*」 운영('22.8~)

* 울산, 통영, 부산, 부산북부, 목포, 군산고용센터 총 6개소

↳ 전담자를 지정하여 조선업 채용지원 서비스 신속·밀착 지원

-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매칭 지원*을 위해 「조선업 도약센터(舊 희망센터)」 확대 운영('22년 3 → '23년 4개소**)

* (예시) 협력사 신규입직자 대상의 취업정착금 지원(3개월 이상 근속, 100만원)

** ('22) 거제, 울산, 군산 → ('23) 목포 추가

○ (조)광역단위 지원

- 광역단위 인력풀 관리, 신속 양성체계 구축 등 산업별 구인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「조선업 취업지원허브*」 구축('23.下)

*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조선업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초광역단위 민관협력체계

□ 온라인

- 워크넷(work-net)에 조선업 일자리정보 제공 및 채용대행서비스, 온라인 채용박람회 등을 지원하는 「온라인 지원관*」 신설('23.下)

* 조선기업 검색·관리, 구인·기업지원 현황, 조선업종 미충원률·구인배율 등 제공

- 조선협회(조선해양ISC)를 통해 지역별·직무별 구인-구직정보를 제공하는 「조선업 일자리매칭 플랫폼」 활성화*('22년 既구축)

* 주요 조선사 사내협력사 대상 설명회 개최,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구직자 DB 확보 등

IV. 제도적 지원방안

1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 6개월 추가 연장

□ 현황

-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해 '23.1~6월분 고용·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 既 시행*(유예기간: 6개월간)

* '22.12.19, 「'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방안」에 포함·발표

□ 지원방안

- 납부유예의 대상이 되는 월별 보험료를 6개월 추가 연장('23.7~12월)
 - 결과적으로, '23년 전체기간(1~12월)에 대한 보험료 납부유예 可, 「조선업 특별업종」 종료('22.12.31)에도 납부유예 1년 연장 효과

2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제한 해제

□ 현황

- 현행 법*상 고용·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은 고용안정·직업훈련 등 고용보험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

*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(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)

** 그간 특별업종·위기지역 지정으로 체납처분 유예 → 체납사업장임에도 사업영위 가능

□ 지원방안

- 조선업 체납사업장 중 체납보험료 분납계획(최대 36개월) 마련 및 성실 이행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사업 지원 한시 허용**

* '23.上,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개정(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의 특례) 추진

3 조선업 외국인력(E-9) 활용 확대방안 추진

□ 현황

- '22년 기준, 조선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(E-9) 입국인원은 2,667명이며, 올해는 도입규모 확대*, 조선업 우선 배정 등으로 5천명 내외 예상

*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(E-9) 도입규모('22년 6.9만명 → '23년 11만명)

- 다만, 조선업에 대한 외국인력 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, '제조업' 쿼터 내에서 배정(조선업 사업장 대상 가점부여 중)

- 한편,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고용인력의 **他 업종**(그외 제조업 등) **으로의 이동** 등으로 인한 인력운용상 애로 호소

【 '23년 외국인력(E-9) 도입인원 배정 현황 】

(단위: 명)

구 분	총 계	제조업	농축산업	어업	건설업	서비스업	탄력배정
'23	110,000	75,000	14,000	7,000	3,000	1,000	10,000
('22년 대비 증감)	(+41,000)	(+23,153)	(+4,570)	(+2,190)	(+1,187)	(+900)	(+9,000)

□ 개선방향

- ①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한 **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 (5천명+a, 2년 한시)** 및 **직업훈련 강화***('23.上 외국인력정책위 상정)

* 입국 초기 E-9 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(원·하청사 협업, 3~4주) 등 강화('23.上)

- ②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해 체류기간을 우대하는 **장기근속 특례*** 신설**

* 출국 후 재입국의 과정 없이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우대 (조선업 분야 직업훈련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특례요건 완화)

** '23.上, 「외국인고용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

V. 기대효과

- ① 「패키지 지원사업」은 조선업체가 스스로 마련·체결한 「상생협약」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지원*하는 것으로, 이를 촉진·유도하는 역할
 - * '상생협약체'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, 그 결과를 지원내용·규모 등에 반영
 - 조선업체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를 통한 「상생협약」의 이행을 통해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중장기 발전 토대 마련
 - ➔ 他 산업의 상생협력 모범사례 창출 여건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산방안 검토

- ② 「상생협약」 체결·이행 초기의 과도기 상황(단계적 기성금 인상)에서, 한시적 지원사업을 통해 원하청의 임금·복지 격차를 완화*
 - * '25년까지 하청근로자의 실질임금 약 10% 인상 효과, 공동근로복지기금 약 2배 증가 등
 - 이를 통해 협력업체로의 신규 인력유입 및 이전직 감소 등 조선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

- ③ 인력양성 확대(훈련), 협력업체 고용지원, 안전기반 구축 등을 통해 조선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
 - 지역 고용·경제 활성화와 함께, 국내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, 원청과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 조성

- ④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연장,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해제 등을 통해 긴 불황기를 견뎌낸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,
 - 외국인력(E-9)의 실효적 활용 확대를 통해 인력운용에서의 애로 경감

VI. 추진일정

- ('23.3월~) 「조선업 희망공제」(신규입직자 대상), 채용예정자훈련, 안전보건패키지 시범도입, 보험료 납부유예조치 연장 등 실시
- (2분기)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(상생임금위 발표), 체납사업장 지원 제한 해제(고보법 시행규칙 개정), 외국인력(E-9) 전용쿼터 신설 등 추진
- (하반기) 「공동근로복지기금」 확대(고시 개정), 폴리텍 교육훈련과정 확대, 조선업 취업지원허브 구축·운영 등 추진

구분	지원내용		시기	비고
임금	▶ 조선업 희망공제 확대	신규입직자 대상	'23.1분기	-
		재직자 대상	'24.1분기	
	▶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		'23.2분기	상생임금위 발표
복지	▶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		'23.3분기	고시 개정 기금지원심사위
	▶ 하청근로자 생활·근로 환경 개선 지원		'23.1분기	-
훈련	▶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		'23.1분기	추가 공고
	▶ 채용예정자훈련 확대·우대		'23.1분기	-
	▶ 장기유급휴가훈련 우대 지원		'23.1분기	-
	▶ 폴리텍 교육훈련과정 확대		'23.4분기	-
안전	▶ 스마트안전장비 및 산재예방 시설개선 특별지원		'23.2분기	고시 개정
	▶ 안전보건패키지 시범도입		'23.1분기	-
	▶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대 지원		'23.1분기	-
	▶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우대 지원		'23.2분기	-
고용지원	▶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		'23.1분기	-
	▶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 신설		'23.1분기	-
	▶ 조선업 일자리매칭 지원 강화	조선업 도약센터	'23.1분기	-
취업지원허브		'23.4분기		
제도	▶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유예조치 6개월 추가 연장		'23.1분기	-
	▶ 성실분납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해제		'23.2분기	고보법 시행규칙 개정
	▶ 조선업 외국인력(E-9) 활용 확대방안 추진	조선업 전용 쿼터	'23.2분기	외국인력 정책위 상정
장기근속 특례		'23.2분기	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회제출	